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22. 6.

대한민국정부

## - (例) 목 차 -

### (가. 법무부 본부 : 49건)

1. 가짜뉴스의 출처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정정보도청구 표시제도,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것 ..... 1
2. 2015년부터 시작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1
3. 법률서비스 공공플랫폼 앱을 만들어 정부가 법률시장에서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 1
4.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면상담을 강제하고자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개정안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신력 있는 여성·아동 단체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1
5.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폭력에 의한 국가배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2
6.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행정소송까지 지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장관의 소송 지휘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조정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2
7.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동거친족’ 및 ‘애인’으로 넓게 되어 있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전/현 배우자, 동거자, 내연관계, 기타 동거친족, 애인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통계원표를 개선할 것 ..... 3
8. 대검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1188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적절한 관리·감

독 조치를 취할 것 .....	3
9. 비공개 행정규칙을 되도록 공개하고 명백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법제처의 제출 통보에 응하며 행정규칙의 제명은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기관 중 행정규칙을 최다 비공개하고 있는 대검찰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	4
10. 퇴직공무원에게 유관기관 취업, 업무 관련성 등 취업제한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퇴직자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 .....	4
11.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법조인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사회경험 없는 로스쿨 학생들이 다수 검사로 임용되고 있고 검사 평가기준도 비공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검사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5
12. ‘법률자문관’, ‘법무보좌관’ 등 검사 본연의 역할이 아닌 자문을 이유로 나가는 파견을 줄일 것 .....	5
13. 검사 직무 중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이 있을 때 해당 검사가 바로 퇴직하여 변호사로 일하지 않도록 법원처럼 정기인사 때만 사표를 수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5
14. 법무부장관은 검경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할 것 .....	5
15. 대법원 판결에서 유우성 사건의 보복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 차원의 철저한 감찰 및 징계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 .....	6
16. 메타버스의 주 이용층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메타버스 성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 .....	6
17. 2021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존중하여 2009년 8월에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
18. 다양한 법률에 산재된 형벌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범위를 넓혀 수사권 남용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벌조항을 신설하거나 형량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법률체계를 점검하	

- 여 시대에 뒤떨어진 형벌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
19.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연계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 ..... 7
20.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업무분담을 반영하여 행정 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검찰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할 것 ..... 8
21.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여전히 검사를 임명하고 있고 법무부 검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 '업무지원 형태'로 일선청 소속 검사를 수시로 파견받는 등 검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검사의 법무부 근무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8
22.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건 배당 절차는 편파·부실수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8
23. 검찰 내 카르텔을 바탕으로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검찰 내의 카르텔을 깨고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 ..... 9
24. 검찰의 표적수사와 강압수사, 별건수사 관행 및 무혐의 사건을 수년 후에 기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등의 공소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
25. 방문조사하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교정행정의 효율성 및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 ..... 10
26. 시스템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할 조직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0
27.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공판기일 전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시할 것 ..... 10
28.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를 했다고 인정한 검사나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당 규칙의 규범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11
29.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언론 쪽에 검찰만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을 주고 활용하도록 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등 검찰권력이 언론과 연계하여 오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할 것 ..... 11

30. 교도소 내 성인 간행물 반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수용동 내에서 성범죄자와의 성인 간행물 공유 억제 등 수용자의 권리와 교화의 목적 간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11
3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석방 인정 기준을 계량화하며, 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형자에게도 신청권과 재심의 신청권을 부여하며, 피해자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가석방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12
32. 2021년 초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층만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사실상 구속집행이 정지가 안 되고 구금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 12
33. 법무부에서 출소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라는 사업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취업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13
34.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수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검토하고, 대전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비를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3
35.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수용자들의 공격성이 높아지고 자살 미수사건 및 교정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4
36.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용자의 의료를 담당하는 교정기관 의료진의 결원, 화장실 등 교도소 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도 심각하므로 전반적인 교정행정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15
37.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등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
38.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하며, 심리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5
39. 보호소년 대상 교육 및 사회정착을 위하여 활동하길 원하는 분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위원회와 자원봉사자의 신청

- 방식 개선 및 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15
40. 위치추적관제센터 관제인력 충원, 영상통화를 통한 고위험 전자장치 부착자 감독 강화, 보호관찰 매뉴얼 정비, 경찰과의 초동수사 공조체제 구축 및 표준화된 업무분장, 긴급 상황 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전자발찌 A/S 대책 마련 등 전자발찌 훼손자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16
41.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3개 부처로 다원화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상정보 실시간 확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실거주지 즉시 확인 곤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19
42.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 .... 19
43. 치료감호소,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법무부 소관 보호 및 수용 시설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것 ..... 20
44. 치료감호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고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20
45.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농어촌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상황이므로 농어촌 및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1
46. 가족결합권의 관점에서 아동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출국되지 않도록 장기체류 외국인 조건부 체류자격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22
47.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내는 경우에도 벌금과 마찬가지로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22
48.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보호장비 사용물품만 규정하고 사용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호 외국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여 물품 사용허가

품목에 휴대폰을 포함하는 등 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23
49. 국적상실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입국 과정에서의 국적상실자 적발 현황을 별도로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24

**(나. 대검찰청 : 25건)**

1. 검찰 조직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개선할 것 .....	25
2. 무죄평정 제도를 전 사건에 확대 적용하고, 사건평정위원회에 외부인을 많이 참여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25
3. 성폭력전담부서에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어 수사실에 비치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 .....	26
4. 디지털성범죄로 접수된 사건의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	27
5.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7
6.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이루어졌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 .....	28
7.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찰하고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것 .....	28
8.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검사·수사관에 대한 교육 및 신고받은 사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절차를 명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28
9. 감찰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9
10.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현재 배정된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지 검토할 것 .....	29
11. 수도권에 있는 지점의 영상녹화율이 타 지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권수사를 위해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것 .....	30
12. 가상자산, 청년 전세자금 사기, 보이스피싱 등 청년 대상 범죄가 심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30
13.	한 번 수집되었던 증거를 증거수집 원인이 되었던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개 사건에서 다시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검찰이 저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미지 1만 4000여 개를 조속히 폐기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 .....	31
14.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 .....	31
15.	우리나라의 미래전략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것 .....	31
16.	부당한 회유·압박 및 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를 위하여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조사절차·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	32
17.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내부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32
18.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3
19.	사건의 재량이척 및 구속기간에 대한 해석 논란 등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것 .....	33
20.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재수사한 경우 피해자에게는 해당 처분사실이 통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33
21.	수사기관협의회를 연내 개최하는 등 경찰과의 소통·협의 체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4
22.	고소인 의사에 반하는 보완수사요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4
23.	대검찰청에서 제정한 규칙 대부분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행정규칙 중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들은 공개하고 관련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할 것 .....	34
24.	대검찰청은 조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에 협조할 것 .....	35

25.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와  
    검찰총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 ..... 35

(다.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  
    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  
    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 16건)

1. (공통) 섭취 후 최대 72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는  
    GHB 약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GHB 약물 관련한 사건의 경우 모발검사  
    에서 약물검출이 안 되더라도 CCTV나 피해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검  
    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 ..... 36
2. (공통) 검사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대상자 되는 경우가 드물어 검찰 내  
    부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란 의심이 있으므로  
    평정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검사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 37
3. (공통) 검찰 시민위원회의 구성부터 실제 우리 국민의 직업 및 연령 분  
    포를 반영하고 시민위원회의 인용률을 집계하는 등 검찰 시민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할 것 ..... 37
4. (공통)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검찰의 준법교육이 부진하므로 준법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년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41
5. (공통)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형 범죄자 문제가 심각하므로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43
6. (공통) 유사수신 폰지사기사건과 같이 코인을 이용한 유사 사기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 ..... 44
7. (공통)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으므로 권리구제에 소  
    홀함이 없도록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책임있게 수  
    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45
8. (공통)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 46
9.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변협 검사평가에 따르면 강압적인 수  
    사,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의자가 자유롭게 진술하지 못하게 하는 사  
    례가 있다고 하므로 해당 검사들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할 것 ..... 49

10. (서울고등검찰청) 과거사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이루어져 무죄로 판결 나더라도 검찰의 관행적인 상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 50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검사직무대리부는 기구개편안을 제출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조직화가 어려운 경우 폐지하도록 할 것 ..... 50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가 치료비나 심리 또는 법률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51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도록 하고, 표적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 51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자발찌 훼손자에 대하여 법무부 및 경찰과의 신속한 영장신청 및 검거 협조를 위하여 노력할 것 ..... 51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진동균 검사 성추행 사건을 유념하여 서울남부지검에서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스로 개혁해서 검찰 내부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여 신뢰받는 서울남부지검이 되도록 노력할 것 ..... 51
16. (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8월에 있었던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 ..... 52

(라.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 8건)

1. (공통) 자체재기수사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해당 제도는 고소·고발인의 항고 취지를 봉쇄하는 제도이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 53
2. (공통) 검사들의 육아휴직 이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56
3.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은 국민소통옴부즈만 제도 운영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8
4. (공통) 인권침해를 한 검사는 직무배제나 적격심사를 통해 검사의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변호사로도 일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58
5. (대전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휴게공간이 없는 관할 지청에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61
6. (청주지방검찰청)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관련자가 더 있는지를 밝히고 보충수사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	62
7.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사중지 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진하므로 향후 수사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62
8. (제주지방검찰청)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공소장을 지나치게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직무를 태만한 담당 검사를 징계할 것 .....	63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산하기관 4개..... : 1건)**

1. (이민정책연구원) 아프가니스탄 수용 난민을 포함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사회통합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할 것 ...	64
--	----

# 1.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법무부)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 가짜뉴스의 출처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정정 보도청구 표시제도,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보원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짜뉴스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통해 적시에 대응, 확산 방지 노력</li> <li>- 신문, 방송 등 언론은 언론브리핑, 보도 설명자료 배포</li> <li>- SNS 등 인터넷 공간의 가짜뉴스는 법무부 공식 SNS로 대응하고, 포털사이트 게시물 열람차단청구</li> </ul>
법무부 본 부	2. 2015년부터 시작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관련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서울고검) 등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위 사건 처분 결과를 검토할 필요 있음</li> <li>○ 향후 위 기관들의 처분 등을 고려하여 사법접근성 제고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갈등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법무부 본 부	3. 법률서비스 공공플랫폼 앱을 만들어 정부가 법률시장에서 책임있게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는 대한변협을 감독하고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 법률서비스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li> <li>○ 향후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p>※ 대한변호사협회, '22. 4. 변호사검색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개발·운영, '22. 6. 모바일 앱 출시</p>
법무부 본 부	4.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면상담을 강제하고자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2. 보수기준표 개정하여 대면상담, 의견서 작성·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마련</li> <li>- 피해자의 의사,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면 상담이 불가능해</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보수개정안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신력 있는 여성·아동 단체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p>	<p>전화, 문자를 통해 상담한 경우 등에도 보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서 작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li> </ul> <p>○ '22. 5.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p> <p>○ 아동보호전문기관과 MOU 체결, 보수기준표 개정 시 한국여성변호사회(피해자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 운영)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여성·아동 단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6.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 실시</li> </ul> <p>○ '22. 5.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시 활용할 계획임</p>
법무부 본부	<p>5.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배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 법무부는 '18. 1.부터 '과거사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p> <p>○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 사건 유형별 배상기준을 추가 정립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p>
법무부 본부	<p>6.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p>	<p>○ 행정소송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법령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고,</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행정소송까지 지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장관의 소송 지휘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조정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p>	<p>지자체 간 소송수행 능력 편차가 상당한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통한 통일적인 소송수행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지휘 시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시스템 활성화, 조정 절차 도입 검토 등 적절한 지휘권 행사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임</li> </ul>
법무부 본 부	<p>7.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동거친족’ 및 ‘애인’으로 넓게 되어 있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전/현 배우자, 동거자, 내연관계, 기타 동거친족, 애인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통계 원표를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된 범죄현상 파악 및 대책 마련 위해 검·경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통계원표 개선을 추진 중임</li> <li>※ '16. 3.~'22. 6. 총 26회 협의</li> <li>○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세분화 등 친밀관계 발생 범죄에 대한 통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범죄통계원표 개선 내용에 적극 반영하겠음</li> </ul>
법무부 본 부	<p>8. 대검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1188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처 이첩절차 등을 규정한 해당 대검예규의 적정성 및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음</li> <li>○ 검찰은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등 공수처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공수처와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9. 비공개 행정규칙을 되도록 공개하고 명백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법제처의 제출 통보에 응하며 행정 규칙의 제명은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기관 중 행정 규칙을 최다 비공개하고 있는 대검찰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조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에서는 행정규칙을 최대한 공개하고 있음 ※ 271개 중 14개 비공개(공개율 : 94.9%)</li> <li>○ 향후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법제처의 문서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제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li> <li>○ 대검찰청 훈령·예규의 공개 여부는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li> <li>○ 비공개 훈령·예규는 그 제명 및 비공개 사유를 모두 법제처에 통보하고 있으며, 법제처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전문을 문서로 송부하여 심사의견을 받고 있음</li> <li>○ 비공개 훈령·예규를 철저히 관리·점검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음</li> </ul>
법무부 본부	10. 퇴직공무원에게 유관기관 취업, 업무 관련성 등 취업제한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퇴직자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대상 공직자 상대로 취업심사 대상기관,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 취업제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11.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법조인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사회 경험 없는 로스쿨 학생들이 다수 검사로 임용되고 있고 검사 평가 기준도 비공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검사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검사 신규 임용 시 전문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고, 경력검사 임용에서도 전문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임
법무부 본부	12. ‘법률자문관’, ‘법무보좌관’ 등 검사 본연의 역할이 아닌 자문을 이유로 나가는 파견을 줄일 것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인원은 2017. 5. 기준 64명(40개 기관)에서 2022. 6.기준 45명(33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  ○ 향후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시 검찰 업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파견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법무부 본부	13. 검사 직무 중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이 있을 때 해당 검사가 바로 퇴직하여 변호사로 일하지 않도록 법원처럼 정기인사 때만 사표를 수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의원면직 신청 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및 면직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임  ○ 향후에도 직무수행 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면직제한 대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직 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법무부 본부	14. 법무부장관은 검경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할 것	○ 2021. 7.부터 검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을 지시하여 일선청의 사법통제, 수사협력 등 업무를 강조하여 왔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12.과 2022. 4.에 각각 실적이 우수한 4개청들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li> <li>○ 또한 최근에는 법령제도개선TF를 가동하여 대검과 긴밀히 협력하여 검경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수사준칙 개정 등의 방안으로 연구·검토중에 있음</li> </ul>
법무부 본 부	15. 대법원의판결에서 유우성 사건의 보복소가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 차원의 철저한 감찰 및 징계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징계청구가 이루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임</li> <li>○ 다만, 감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li> </ul>
법무부 본 부	16. 메타버스의 주 이용층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메타버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에서 신종 플랫폼(메타버스 등)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온라인 캐릭터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특별준수사항에 추가하는 보호관찰 개선 권고(5차, '22.01.28.)하였음</li> <li>- 성폭력처벌법, 보호관찰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권고</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17. '21. 9.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존중하여 '09. 8. 쌍용자동차 노조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용자동차 노조파업 참여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방안과 관련된 국회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음</li> <li>○ 이와 관련하여 수행청 및 지휘청의 의견과 국회 결의안의 내용, 법리적 타당성,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음</li> </ul>
법무부 본부	18. 다양한 법률에 산재된 형벌 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범위를 넓혀 수사권 남용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벌조항을 신설하거나 형량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법률 체계를 점검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형벌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처벌 만능주의나 과잉입법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함</li> <li>○ 다만, 처벌강화를 포함한 형사법 제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li> <li>※ 개선 입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대 국회)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상향, n번방 사건 관련 처벌 강화 등</li> <li>- (21대 국회)스토킹처벌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위반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등</li> </ul> </li> <li>○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및 형사처벌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법무부 본부	19.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연계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5.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 내용 반영하여 국가범죄대응역량 약화 및 국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법령 개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20.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업무 분담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검찰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할 것	○ '22. 5.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검찰청 직제를 개편하는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법무부 본부	21. 법무부 내 주요 보직에 여전히 검사를 임명하고 있고 법무부 검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 '업무지원 형태'로 일선청 소속 검사를 수시로 파견받는 등 검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검사의 법무부 근무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前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하였으나,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이직(평균 재직 1년 10개월)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 발생 ※ '18.~'21. 4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함께 협력하여 근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의 적정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임
법무부 본부	22.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건 배당 절차는 편파·부실수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건배당지침」(대검예규)에 따라 전담·전문성, 지휘·관련성, 합리·형평성, 시의·상당성 등을 기준으로 배당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1. 7.부터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을 시행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23. 검찰 내 카르텔을 바탕으로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검찰 내의 카르텔을 깨고 전관 예우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11.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형사사건 변호활동내역 입력을 전산화하고(KICS 변호활동관리부에 입력) 담당자와 기관장 상호간 입력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2021. 2.부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KICS 변호활동 관리부에 변호활동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대상사건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li> <li>○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활동 보장을 위하여 검찰수사 단계의 구두변론 절차 구체화·투명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li> <li>○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 6.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li> <li>※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확대,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 확대 등</li> <li>- '22. 6. 국회 법사위 계류 중</li> </ul> </li> </ul>
법무부 본부	24. 검찰의 표적수사와 강압수사, 별건수사 관행 및 무혐의 사건을 수년 후에 기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등의 공소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인권보호관및인권보호담당관운영에관한지침(대검예규)」, 「검찰직접수사과정에서발견된별건범죄수사단서의처리에관한지침(대검예규)」, 「검찰직접수사개시사건에서인권보호관점검지침(대검예규)」 등을 마련하여 직접수사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정착해 나가고 있음</li> <li>○ 앞으로도 수사과정에서 표적수사,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25. 방문조사하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교정 행정의 효율성 및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 참고인의 출석의사 존중,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수용자 출석요구 금지, 변호인 조사 참여권 및 접견권의 폭넓은 보장, 반복 출석조사 사건에 대한 부서장 사전 보고 및 인권보호관의 점검 등 다수 개선 방안을 시행하였음</li> <li>○ 앞으로도 범죄 수사 및 실체적 진실규명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li> </ul>
법무부 본 부	26. 시스템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할 조직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3.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했는데, 향후 범죄정보의 수집과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li> </ul>
법무부 본 부	27.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공판기일 전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에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하고, 형사사건 공개·공소장 국회제출 기준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28.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인권침해를 했다고 인정한 검사나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당 규칙의 규범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직무 관련 인권침해사건의 실효적인 처리를 위하여 21. 12.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운영하고 있음</li> <li>○ 일선 청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대검에 직접 보고하며,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감찰·수사도 개시하여 검찰직무 관련 인권침해사건의 실효적 처리 도모함</li> <li>○ 앞으로도 검찰직무 관련 인권침해사건의 실효적 처리를 통해 인권 관련 규칙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법무부 본부	29.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언론 쪽에 검찰만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을 주고 활용하도록 하여 언론을 이용하는 등 검찰 권력이 언론과 연계하여 오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 12.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21. 7. 공개요건을 더욱 명확화·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음</li> <li>○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조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법무부 본부	30. 교도소 내 성인 간행물 반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수용동 내에서 성범죄자와의 성인 간행물 공유 억제 등 수용자의 권리와 교화의 목적 간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간행물 반입 통계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성인 간행물 반입 현황을 작성·관리하고 있음</li> </ul> </li> <li>○ 제도개선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 교정교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성인 간행물 반입 및 공유 억제를 위해 규정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3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석방 인정 기준을 계량화하며, 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형자에게도 신청권과 재심의 신청권을 부여하며, 피해자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가석방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관련 법안(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가석방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예정임</li> </ul> </li> <li>○ 가석방 인정기준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유형, 피해회복 정도 등에 따라 형집행기간 등 정량요소를 차등 적용하고, 완화요건을 점수화하여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등 가석방 인정기준을 계량화함</li> </ul> </li> <li>○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9명의 위원 중 5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있음</li> </ul> </li> <li>○ 수형자의 가석방 신청권 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요건 충족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가석방 필요적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석방 심사 탈락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li> </ul> </li> <li>○ 피해자의 가석방 의견제시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석방 심사시 피해자의 가석방 불허 및 허가탄원, 피해회복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32. 2021년 초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증만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사실상 구속집행이 정지가 안 되고 구금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결구금일수 산입 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 구속집행정지 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해소하였음</li> </ul> </li> <li>○ 확진자 재발 방지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교정시설 통합매뉴얼을 수립,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도, 확진자의 증상에 따라 시설 내 치료 또는 구속집행정지 후 전담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li> </ul> </li> </ul>
법무부 본부	33. 법무부에서 출소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라는 사업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해당 취업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확대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예산 요구 시 사업 계획 인원 및 예산 지속 확대 추진</li> <li>※ ('21.) 7,000명, 84억</li> <li>('22.) 8,000명, 104억('21년 대비 23.8%증)</li> <li>('23.) 8,500명, 126억 협의 추진 중 ('22년 대비 22.2%증)</li> </ul> </li> <li>○ 출소자 일자리 기반 마련을 통한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기업 발굴 및 취업처 연계를 통해 출소자의 일자리 기반 확대</li> <li>※ ('21.) 신규기업 300개 확보('20년 대비 36.4%증) 및 267명 취업 연계(78.5%)</li> <li>('22.) 신규기업 300개 확보 추진</li> </ul> </li> <li>○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출소자 자립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정기 협의회의 개최를 통한 협업 체계 강화</li> <li>※ 본부 협의회 분기별 개최, 지역별 협의회 반기별 개최</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34.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수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검토하고,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비를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시설 확충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시설 신축 및 수용동 증축 등 수용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li> </ul> </li> <li>○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사업비 정부 재정 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사업시행자 : LH)으로 추진 중임.</li> <li>- '22. 2. 사업시행협약 체결 이후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 중으로 현 시점에서 정부 재정 투입 검토는 곤란함</li> </ul> </li> </ul>
법무부 본부	35.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수용자들의 공격성이 높아지고 자살 미수 사건 및 교정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사고 방지대책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죄명·죄질 등에 따라 분류수용을 철저히 하고, 사고유형에 따른 교정사고 방지대책을 더욱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겠음</li> </ul> </li> <li>○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 상담 강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 우려자에 대한 동정관찰을 강화하는 등 자살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음</li> </ul> </li> </ul>
법무부 본부	36.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용자의 의료를 담당하는 교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의료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채용 홍보 및 수시채용 확대에 노력하겠음</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의료진의 결원, 화장실 등 교도소 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도 심각하므로 전반적인 교정행정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p>	<p>○ 화장실 등 교도소 시설의 노후화 - 교정시설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하여 '22년 공사비(659억 원)를 확보하여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임. - 특히, 수용자 화장실 및 샤워장 등 수용자 생활시설 개선을 통하여 인권적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p>
<p>법무부 본 부</p>	<p>37.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등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22. 6.)</p> <p>○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 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p>
<p>법무부 본 부</p>	<p>38.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심리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하며, 심리 기일 시일과 장소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현재 관련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 - 소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참여권 등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예정</p> <p>○ 국회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소년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정춘숙 의원안('20. 7.) 주요 내용</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등 참석 허가</li> <li>•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등을 통지</li> </ul>
법무부 본 부	39. 보호소년 대상 교육 및 사회정착을 위하여 활동하길 원하는 분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신청방식 개선 및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전국 소년원을 자원봉사 수요기관으로 등록 완료(’21. 10.), 자원봉사자 적극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li> <li>* <a href="https://www.1365.go.kr">https://www.1365.go.kr</a>(행정안전부)</li> <li>○ 또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신청’ 메뉴 신설을 추진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 1.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과 업무협약, 연내 메뉴 신설 예정</li> </ul> </li> <li>※ 현재, ‘소년보호위원’ 1,173명과 일반 자원봉사자 1,987명 등 총 3,160명이 위촉되어 보호소년 등의 교육 및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 중</li> </ul>
법무부 본 부	40. 위치추적관제센터 관제인력 총원, 영상통화를 통한 고위험 전자장치 부착자 감독 강화, 보호관찰 매뉴얼 정비, 경찰과의 초동 수사 공조체제 구축 및 표준화된 업무분장, 긴급 상황 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경우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22년 소요정원으로 관제인력 8명을 총원하였음</li> <li>○ 고위험자에 대한 영상통화 및 지자체 CCTV 연계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해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 피부착자의 지도감독에 범죄수법을 고려한 영상통화 활용(’22. 2.)</li> </ul> </li> <li>※ 전자감독대상자 지도감독 등에 영상통화·CCTV 활용(’19. 7.)</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비한 대책, 전자발찌 A/S 대책 마련 등 전자발찌 훼손자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CCTV 연계 지속 확대 및 보호관찰관 현장출동 시 태블릿 PC를 통한 CCTV 열람 추진('22. 하반기)</li> <li>※ '22. 5.말 현재 총 10개 광역지자체 CCTV 연계 활용 중</li> <li>○ 훼손사건 대응 강화 및 훼손자 조기 검거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장치 훼손사건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음</li> <li>- 훼손 시 신속수사팀 중심의 대응 체계 및 상황별 세부 대응요령 마련('22. 1.)</li> <li>-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훼손 발생 시 수사팀 간 공조방식 개선('22. 4.)</li> <li>○ 훼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li> <li>- 훼손지 관할 경찰서를 '협조중심 경찰서'로 지정, '협조중심경찰서' 형사(수사)과장과 핫라인 구축('21. 9.)</li> <li>- 고위험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 확대 및 수사 관련 특이사항 공유</li> <li>- 현행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대응 경찰서별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지역경찰청 단위 훈련으로 격상 추진('22. 하반기)</li> <li>○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고위험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하여</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김영배 의원(법사위)이 협의하여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마련('21. 10. 22. 발의)</li> </ul> <p>○ 기존 전자장치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전자장치 A/S를 실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전자장치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전자장치 보급('22. 2.)</li> <li>- 매월 2회 이상 문제점이 발견된 전자장치를 취합 후 수행사에 문제점 개선·보완 요청 및 수리</li> </ul> <p>○ 이외에도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군 전담제’ 시행 등 고위험자 선별·관리 체계 개선('21. 9.)</li> <li>-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24시간 신속·엄정한 대응을 위해 신속수사팀 설치·운영('21. 10.)</li> <li>-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과 협력을 통한 영장의 신속한 처리 및 특사경 교육 강화</li> <li>• 국토부 차적정보조회시스템 구축('21. 10.)</li> <li>• 통신수사시스템 연계·운영('21. 12.)</li> </ul> </li> <li>- 훼손 방지를 위해 견고성을 대폭 강화한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개발 추진('22. 12.)</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41.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3개 부처로 다원화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상정보 실시간 확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실거주지 즉시 확인 곤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상정보 제도는 형사 집행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사회 내 처우와 같은 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통합 관리할 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관계 기관, 국회 등 통합 운영에 관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음</li> <li>○ 재범 위험성이 높아 부착 명령이 선고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실시간 위치 확인을 통해 밀착 감독 중이며, 이중 신상공개된 자의 주거지 정보는 공개정보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는 실시간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주거지 정보가 오(誤)정보로 판단되면 신속하게 직권으로 정정('21. 10.부터 실시)</li> </ul> </li> </ul>
법무부 본 부	42.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족한 전문의 확충을 위해 민간 스카우트 초빙 및 보수 인상 등 추진 중이며,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간선택제 의사 2명에 대해 근무시간을 늘려 재계약('22. 1.) 및 일반임기제 의사 3명 채용, 민간스카우트 초빙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채용 절차 진행 중('22. 6.현재)</li> <li>- 민간병원 퇴직의사, 퇴직의대 교수 등을 기간제의사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23년 예산안 편성에 포함 기획재정부에 요청</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과 공중보건의 충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차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보수 및 각종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li> <li>○ 또한, 병상수 단계별 축소 및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특수의료장비(MRI·CT) 도입, ‘법정신의학연구소’ 직제화 및 연구인력 증원 추진 등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li> </ul>
법무부 본 부	43. 치료감호소,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법무부 소관 보호 및 수용 시설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포함한 인권침해사례가 있는지를 ‘중요 점검항목’으로 설정하고, 설문 및 면담 항목에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음</li> <li>○ 또한 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인권침해 조사반에 여성 검사와 조사관을 편성하여 여성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li> </ul>
법무부 본 부	44. 치료감호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고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정도·사회복귀 가능성 등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진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주치의 등을 참여시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상황 등 의료적 견해를 상세히 전달하여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음</li> <li>○ 아울러, 피치료감호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국립법무병원 병동 증축,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추진 중이며, 치료감호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45.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농어촌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상황이므로 농어촌 및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p>○ 법무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게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함(1. 1.부 / 6.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상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를 상시화하여 농·어촌에서 연중 상시 계절근로자 고용 가능</li> </ul> </li> <li>- 고용주별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주별 최대 12명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 지원</li> </ul> </li> </ul> <p>※ 기존 9명 → 개선 1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다시 계절근로자 비자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li> </ul> </li> <li>-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지역농협 등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개별농가에 공급하는 방식</li> </ul> </li> <li>-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 분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분야와 관계 깊은 제조업 분야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li> </ul> </li> </ul> <p>※ 상주 곳감·속초 명태 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시 연령 요건 완화</li> </ul> </li> </ul> <p>※ 기존 30~55세 → 개선 19~55세</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46. 가족결합권의 관점에서 아동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출국되지 않도록 장기체류 외국인 조건부 체류자격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p>○ 법무부는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제대상을 더욱 확대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2.1.부터 시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① 국내출생 및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하여 국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②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하여 국내 7년 이상 체류한 아동</li> <li>• (내용) 국내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아동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 또는 고교를 졸업한 경우 부모와 함께 국내 체류 허용</li> </ul> </li> </ul>
법무부 본 부	47.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내는 경우에도 벌금과 마찬가지로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p>○ 출국조치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그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출국 후에는 납부 담보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분납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1. 1.부터 신용카드로 범칙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li> <li>- 신용카드로 범칙금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임</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부	<p>48.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보호장비 사용물품만 규정하고 사용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호 외국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여 물품사용허가 품목에 휴대폰을 포함하는 등 외국인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인권국 총 5차례 현장조사 등 진상조사 실시('21.9.29~21.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국장 해당보호외국인 면담</li> <li>-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 및 종류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확인</li> <li>- 인권단체와 간담회 개최</li> </ul> </li> <li>※ '21.11.1.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li> <li>○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중('22. 5. 25. 입법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장비 사용요건, 종류 등 규정 신설</li> </ul> </li> <li>○ 「보호외국인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장비 종류, 사용요건 등 법률에 규정</li> </ul> </li> <li>○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중임('22. 5. 25. 입법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li> <li>-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진술기회부여 및 이의신청 규정 신설</li> <li>• 특별계호 최대기간 및 사용 금지 기간 명문화</li> </ul> </li> </ul> </li> <li>※ 최대72시간(72시간 이내 1회 연장)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내 특별계호 불가</li> <li>○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 개방형 보호동 운영 실시('2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전화 및 인터넷PC 사용공간 마련으로 외부와의 소통 및 정보 접근권 보장</li> <li>- 운동장 상시 개방 등 자유로운 이동 보장</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보호외국인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외국인의 처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인권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보호시설 운영근거 마련</li> <li>•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처우를 위하여 보호외국인 개인별 분류 심사 실시</li> <li>• 의료 처우 강화</li> </ul> </li> </ul>
법무부 본 부	49. 국적상실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입국 과정에서의 국적상실자 적발 현황을 별도로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p>○ 국적상실자 적발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분석 및 모니터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만 출입국 과정에서 국적상실자 적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여 국적상실 미신고자 적발 양태와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음</li> <li>- 단기적으로 現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기능 개발을 통해 국적상실자 적발 현황을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p>※ 우리 부는 '19년 8월부터 사전정보 시스템(APIIS) 분석을 통한 국적상실 추정자 추출하여 범위반자 사범 처리하고 있음</p>

## 2.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포함)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 검찰 조직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11.부터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청에 시행·권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의전·회의 탈(脫) 권위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전 행사 및 준비 간소화</li> <li>· 유관기관 및 하급직원 우선 배려</li> <li>· 권위적인 용어(영접 등) 순화</li> </ul> </li> </ul> </li> <li>○ 2022. 3.부터 소속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수평적이고 상호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협의회를 지속 시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검 화합과 공감의 소통협의회 개최·운영(제1회, 202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6. 중 제2회 개최 예정</li> </ul> </li> </ul> </li> <li>○ 앞으로 관행적인 권위주의적 행사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변모하여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2. 무죄평정 제도를 전 사건에 확대 적용하고, 사건평정위원회에 외부인을 많이 참여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죄사건 뿐만 아니라 면소, 공소기각 사건, 항고·재항고사건, 헌법소원 인용사건, 재정신청사건 등 검사가 처리한 사건의 제분야에 관하여 관여검사 및 결재자의 과오 유무와 업무처리 우수 정도를 평정하고 있음</li> <li>○ 사건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무죄사건’에서 ‘무죄등사건’으로 확대하여 면소, 공소기각 등 사건도 사건평정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성폭력전담부서에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어 수사실에 비치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p>	<p>될 수 있도록 사건평정규정을 개정함 (2022. 5.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사건평정위원회 위원 12인 중 10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에도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검사들의 과오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li> <li>○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성폭력전담부서에서 사건 처분 및 각종 영장·부가처분 청구 등을 전담하게 하고 있음</li> <li>○ 성폭력피해자 조사 시 특성에 맞게 개정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표현을 수정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21. 11.)</li> </ul> </li> <li>○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li> <li>○ 앞으로도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디지털성범죄로 접수된 사건의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li> <li>○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1.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사·공판 시 유의사항을 반영한 '21. 12.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배포하여 성폭력 전담검사·수사관의 수사 능력 향상 및 엄정한 대응을 강조함</li> <li>○ 앞으로도 검찰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매뉴얼 및 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하겠음</li> </ul>
	5.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에서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삭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1. 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디지털성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음</li> <li>○ 또한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전면 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추가하였음('21. 11.)</li> <li>○ 추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안내문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p> <p>○ 앞으로도 검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음</p>
	<p>6.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이루어졌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p>	<p>○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따라 여러 수사기관 상호간 원만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사안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음</p>
	<p>7.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찰하고 제도개선책을 강구할 것</p>	<p>○ '22. 3.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했는데, 향후 범죄정보의 수집과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임</p>
	<p>8.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검사·수사관에 대한 교육 및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절차를 명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p>	<p>○ 대검은 「인권침해 예방·감독, 관련지도·교육」 업무의 일환 및 인권개선안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일선청 인권 관련제도 등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감독하고 있음</p> <p>○ 일선 청 인권보호관은 대검 시행의 인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소속청에 교육·안내함으로써 예방적 인권감독기능 수행하고 있음</p> <p>○ 검찰직무 관련 인권침해사건 담당은 각청 인권보호관으로 일원화하고,</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검찰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10.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현재 배정된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지 검토할 것</p>	<p>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대검에 보고하도록 지침 운영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에도 검찰직무 관련 인권침해사건 처리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li> <li>○ 검찰은 외부 인사를 검찰부장으로 임명하고, 중요 검찰사건에 대하여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를 거쳐 검찰을 진행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 객관성을 제고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앞으로도 해외 검찰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개선 작업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li> <li>○ '22년 예산 편성시 검경수사권 조정 및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인권·민생 수사역량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업무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단위사업·사업명 변경을 실시하고 예산을 일부 축소·전환하였음</li> <li>○ 아울러 검찰에서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의 상당부분은 부패·경제범죄거나, 경찰 송치사건에서 관련성이 있어 추가로 인지한 사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 사건 수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을 뿐더러,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량도 감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li> </ul> <p>※ 2020년 검찰 직접수사 건수: 43,485건          ※ 2021년 검찰 직접수사 건수: 44,004건</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송치사건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음</li> <li>○ 향후 업무량 추이를 살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li> </ul>
	<p>11. 수도권에 있는 지검의 영상녹화율이 타 지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권수사를 위해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소재 검찰청의 영상녹화율이 전체 평균보다 저조하였음 ※ 수도권 평균 6.4%, 전국 평균 10.9%('21. 1.~8.)</li> <li>○ 이에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상 필요적 영상녹화조사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영상녹화조사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격려하는 등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li> </ul>
	<p>12. 가상자산, 청년 전세 자금 사기, 보이스피싱 등 청년 대상 범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 청년 전세 자금 사기 관련 주요 범행 사건처리기준을 토대로 일선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선 청 대상 서민다중피해범죄 사례 및 수사 착안사항 책자 배포('22. 3.)</li> </ul> </li> <li>○ 또한 대검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운영하면서 각종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건의하였고, 유관기관과 함께 대국민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선 검찰청에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기구</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1. 12.) 및 합동수사단(’22. 5.) 각 설치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연합회 합동 자동화기기 경고 화면 개선 건의(’21. 11.)</li> <li>- 「올바른 일자리 고르기 유의사항 리플릿」 제작, 배포(’21. 6~8.) 등</li> </ul> <p>○ 향후에도 관련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음</p>
	<p>13. 한 번 수집되었던 증거를 증거수집 원인이 되었던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개 사건에서 다시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검찰이 저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미지 1만 4000여 개를 조속히 폐기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p>	<p>○ 현재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물로 수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고 있음</p> <p>○ 매년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폐기 점검을 통해 범죄 혐의와 무관한 디지털증거가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신속히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음</p>
	<p>14.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p>	<p>○ 별건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21. 3.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 지침」을 제정하였음</p> <p>○ 검찰 직접수사 권한 및 수사부서 제한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내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임</p>
	<p>15. 우리나라의 미래전략 산업 발전을 위하여</p>	<p>○ 검찰은 기술유출, 특허범죄 등 전문사건에 대하여 전담 수사부서</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것	<p>등을 신설하고 관련분야 경력검사, 특허수사자문관 등 전문 인력 배치를 비롯한 꾸준한 수사역량 강화노력 및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하여 왔음</p> <p>○ 향후에도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여 기술유출범죄, 특허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p>
	16. 부당한 회유·압박 및 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를 위하여 검찰의 출석요구·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조사 절차·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	<p>○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 참고인의 출석의사 존중,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수용자 출석요구 금지, 변호인 조사 참여권 및 접견권의 폭넓은 보장, 반복 출석조사 사건에 대한 부서장 사전 보고 및 인권보호관의 점검 등 개선 방안을 다수 시행하였음</p> <p>○ 앞으로도 수용자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p>
	17.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내부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p>○ 디지털 증거 관련 내부 규정으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예규)」이 있으며 위 규정과 실무 매뉴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p> <p>○ 내부 규정을 체계화 하고 관련 매뉴얼을 최신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8.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 마음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 스트레스 검진,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음</li> <li>○ 앞으로도 소속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li> </ul>
	19. 사건의 재량이척 및 구속기간에 대한 해석 논란 등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처법」상 사건 이척의 구체적 기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등에 관한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경찰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검토하겠음</li> <li>○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입법 논의 적극 지원 예정임</li> </ul>
	20.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재수사한 경우 피해자에게는 해당 처분 사실이 통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검사가 재수사를 진행할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건 처분 시 피해자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CS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단계별 사건처분결과 등을 통지하고,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제공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형사절차상 권리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li> <li>- 향후에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1. 수사기관협의회를 연내 개최하는 등 경찰과의 소통·협의 체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22. 고소인 의사에 반하는 보완수사요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검찰은 경찰과 실무 협의를 통해 현안에 대한 소통 및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대선 및 지선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현안에 관한 검·경협의회의 개최</p> <p>○ '22. 9.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임</p> <p>○ 고소인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요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p>
	<p>23. 대검찰청에서 제정한 규칙 대부분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행정규칙 중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들은 공개하고 관련자들에</p>	<p>○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 등 비공개된 행정규칙 중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부분은 별도 안내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게 해당 내용을 안내할 것</p>	<p>에서 알기 쉽게 내용을 수정하고, 각 범죄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치를 적시하도록 전면 개정하였음('21.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음</li> </ul>
	<p>24. 대검찰청은 조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에 협조할 것</p>	<p>○ '22. 1. 24. 및 1. 28. 제1, 2차 형사사법정보체계 임시협의회를 통해 대검찰청 등 각 형사사법처리기관은 공수처의 KICS 연계방식을 외부연계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합의함</p>
	<p>25.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와 검찰총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p>	<p>○ 1심에서는 피고인 측의 공소권남용 주장이 배척되어 전부 유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에서도 심급 간 의견이 나뉘어졌던 사안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검찰 업무에 참고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1. 섭취 후 최대 72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는 GHB 약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GHB 약물 관련한 사건의 경우 모발검사에서 약물 검출이 안 되더라도 CCTV 나 피해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조사 할 것(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HB에 대한 피해자 생체시료 감정 외에도, 범행 현장 유류물 철저 확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인터넷 검색·구매내역 확인 등 증거 관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처리할 예정임(서울중앙)</li> <li>○ 성폭력 사건 수사 중 증거물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 분야별 전문가 등의 정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위촉된 분야별 전문가에게 감정 등 의견 조화를 실시 하겠음 (서울동부)</li> <li>○ GHB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 수사 시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하여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서울서부)</li> <li>○ 각종 약물 관련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도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및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인천지검)</li> <li>○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GHB약물 관련이 의심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하겠음(의정부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HB 약물 관련 사건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증거 검토하여 실제 진실 규명을 위하여 철저히 수사하겠음(춘천지검)</li> <li>○ GHB의 원료물질인 GBL를 투약한 피의자를 직구속하는 등 관련 사건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li> <li>○ 앞으로도 경찰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지자체 CCTV 활용 확대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수원고검, 수원지검)</li> </ul>
	<p>2. 검사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대상자 되는 경우가 드물어 검찰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 가란 의심이 있으므로 평정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검사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적격심사는 검사의 업무실적, 근무평정, 사건처리 내역, 동료 의견 등 다양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외부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li> </ul>
	<p>3. 검찰 시민위원회의 구성부터 실제 우리 국민의 직업 및 연령 분포를 반영하고 시민위원회의 인용률을 집계하는 등 검찰 시민위원회의 실질화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시민위원회 결정에 시민들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다양한 직업군,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li> <li>○ 중요 사건, 국민적 관심사건 등 처분 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적극</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위해 노력할 것(공통)</p>	<p>활용하고 검찰 시민위원회 의견을 사건 처분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서울중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동부지검은 '21. 4. 홈페이지 공고 및 기관추천을 받아 직업, 성별, 연령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21명의 신규위원을 추가로 위촉함</li> <li>○ '21. 1.부터 현재('22. 5.)까지 개최횟수 6회(12건)를 심의하였고, 검찰시민위원회 회부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검찰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서울동부)</li> <li>○ 서울남부지검은 사업가, 교수, 의사, 연구위원, 마을활동가, 학생,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li> <li>○ 사건담당 주임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고 있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에도 검찰 시민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서울남부)</li> <li>○ 서울북부지검은 2022. 3.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검찰시민위원을 신규 위촉하였고, 매월 2회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처분에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li> <li>○ 향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인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검찰처분에 반영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음 (서울북부)</li> <li>○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심의 대상 확대 및 사건 처리 시 심의의견 적극 반영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 (서울서부)</li> <li>○ 인천지검은 관내 각 분야 대표단체의 추천을 받아 교수, 공무원, 상담사, 전문직,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함</li> <li>○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을 하고 있고, 위원회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에도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인천지검)</li> <li>○ 의정부지검 검찰시민위원 위촉 시 직업, 연령을 고려하여 편중이 없도록 하겠음(의정부지검)</li> <li>○ 춘천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의 연령, 직업은 실제 우리 국민 분포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음</li> <li>○ 2021년도 춘천지검 시민위원회 인용율은 100%로, 인용율을 집계하고 있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춘천지검)</li> <li>○ 수원고검은 현재 교수, 시민활동가, 의사, 언론인, 회사원,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 20·3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음(수원고검)</li> <li>○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추어 2021. 10.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시민들의</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참여 경로를 확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계, 종교계,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 및 폭넓은 연령대 (20대~70대)의 위원을 위촉하여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li> </ul> <p>○ 검사가 위원회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할 경우, 지침에 따라 참석 위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 (수원지검)</p>
	<p>4.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검찰의 준법교육이 부진하므로 준법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년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공통)</p>	<p>○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잠정 중단한 소년범죄 예방 활동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재개함으로써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음(서울중앙)</p> <p>○ 서부지검은 2013년부터 관내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소년범에 대한 ‘음악·미술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style="padding-left: 20px;">※ 2013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소년범 총 336명에 대해 음악·미술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p> <p>○ 코로나19가 감소세인 점 고려하여 학교 방문 강의, 검사와의 대화 등을 실시하여 소년범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음(서울서부)</p> <p>○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잠정 중단한 각종 준법교육,</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소년범죄 예방행사 등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재개함으로써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음(인천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위원을 통해 우범소년 결연사업, 법질서 교통안전 캠페인, 청소년 유해활동 계도 등 소년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검찰청 방문 대면 교육은 하지 못하였음</li> <li>○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므로, 향후 초중고 학생 검찰청 견학 등 준법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의정부지검)</li> <li>○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관내 학교 집합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소년법의 교화·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준법교육을 활성화하겠음(춘천지검)</li> <li>○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소년법 선도를 위한 재범 방지 방안을 적극 활용 하고 있음</li> <li>○ 외부 강의, 청사견학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준법교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수원고검, 수원 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형 범죄자 문제가 심각하므로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 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되, 사건 당사자의 형편, 경제사정 등도 면밀하게 살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구형도 적극 검토하겠음(서울중앙)</li> <li>○ 서부지검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관련 범죄 등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대검 기준에 따라 양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li> <li>○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서울서부)</li> <li>○ 코로나19 관련 방역 방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적극 활용,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인천지검)</li> <li>○ '21. 8. 대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중심 벌금형 업무 개선 방안」에 따라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벌금납부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사건처리 하고 있음(의정부지검)</li> <li>○ 대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중심 벌금형 업무 개선 방안 지시에</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따라 벌금형 업무를 탄력적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국민들의 고통을 유념하여 사건 처리하겠음(춘천지검)</p> <p>○ 코로나19 관련 방역 방해 사범은 엄정히 대처하되, 민생사범에 대하여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감경 구형, 기소유예 적극 활용, 벌과금 분납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수원고검, 수원지검)</p>
	<p>6. 유사수신 폰지사기 사건과 같이 코인을 이용한 유사 사기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 (공통)</p>	<p>○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등 신종 유사사기 사건에 대해 엄단하고, 피해회복 및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음(서울중앙)</p> <p>○ 유사수신, 다단계, 폰지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피해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서울서부)</p> <p>○ 신종 유사사기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및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음(인천지검)</p> <p>○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등 신종 사기 범행을 엄정히 수사하겠음(의정부지검)</p> <p>○ 폰지사기 사건은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므로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많으므로 권리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책임있게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통)</p>	<p>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춘천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범죄 형태로 인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음(수원고검, 수원지검)</li> <li>○ 항고사건 검토 시 근로기준법위반 사범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기수사를 명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li> <li>○ 향후에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하겠음(수원고검)</li> <li>○ 근로기준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여 대처 중임</li> <li>○ 향후에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 수사를 통해 엄단할 예정임(서울중앙)</li> <li>○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건에서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하겠음(서울서부)</li> <li>○ 의정부지검은 '21. 11. 임금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고, '22. 4. 퇴직금 1억 4천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업주를</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구속하는 등 올바른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의정부지검)</li> <li>○ 근로기준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대처 중임</li> <li>○ 향후에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형사조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음(인천지검)</li> <li>○ 근로기준법 사건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음(춘천지검)</li> <li>○ 근로기준법위반 사범 집중 수사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사건 수사 및 실무 적용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li> <li>○ 향후에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겠음(수원지검)</li> </ul>
	<p>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고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겠음</li> <li>※ 2021년 전국 검찰청 중 서울고검 우선구매실적 1위임(서울고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중앙지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손소독젤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있고 (2021년 21,730,000원 상당, 2022. 6. 3. 기준 28,150,000원 상당)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음(서울중앙)</li> <li>○ 2021년도 국정감사 이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치 시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봉투 등 약 180만원 상당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 완료</li> </ul> </li> <li>○ 2022년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할 예정인 것을 비롯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음(서울동부)</li> <li>○ 2021년도 국정감사 시정 요구 이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도를 이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내지, 보존박스, A4용지 등 340만원 가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완료</li> </ul> </li> <li>○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하여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 예정(서울남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북부지검은 2022. 5. 기준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약 4백만 원 상당을 구매하는 등 지속적인 구매에 노력하고 있음</li> <li>○ 향후 소모성 물품 및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음(서울북부)</li> <li>○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도 우리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은 10,224,000원으로, 총 구매액의 1.1% 수준임</li> </ul> </li> <li>○ 향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음(서울서부)</li> <li>○ 인천지검은 2021년 2,600만원 상당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총 구매액 7억 1,000만원 중 4%)하는 등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준수하였고, 향후에도 제도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기관별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00분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함(인천지검)</li> </ul> </li> <li>○ 21년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액 6,181,500원을 사용하였으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금액 및 비율 준수 畢), 향후 22년도 관련 물품 구매 시(코로나 19 관련 방역 물품 및 청소용품 등), 우선구매제도 금액 및 비율을 준수하여 구매 예정(의정부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관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사무용품(복사용지, 마스크 등) 등을 우선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준수하겠음(춘천지검)</li> <li>○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매하는 총 구매액(제품과 용역 등 서비스, 단, 공사는 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음(수원고검)</li> </ul> </li> <li>○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수원지검)</li> </ul>
	<p>9. 변협 검사평가에 따르면 강압적인 수사,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의자가 자유롭게 진술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해당 검사들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고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을 실시하고 있음</li> <li>○ 변협자료 등을 기초로 교육을 통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서울고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고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을 실시하고 있음</li> <li>○ 다만, 변협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비위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변협자료 등을 기초로 교육을 통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수원고검)</li> </ul>
	10. 과거사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이루어져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검찰의 관행적인 상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서울고검)	○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국민통합 등을 감안하여 명백히 부당한 판결 외에는 가급적 상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음
	11.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검사직무대리부는 기구개편안을 제출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조직화가 어려운 경우 폐지하도록 할 것(서울중앙, 인천지검, 수원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직무대리부에 대한 정기직제 요구서를 제출하였음(서울중앙)</li> <li>○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정식직제화나 폐지 등 직제개편은 법무부 소관 사항임</li> <li>○ 다만 일선 청에서도 법무부에 정식직제화를 건의하는 등 향후 정규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인천지검)</li> <li>○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정식직제화를</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추진해 나갈 예정임(수원지검)</p>
	<p>12. 범죄피해자가 치료비나 심리 또는 법률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서울중앙)</p>	<p>○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통한 피해자 지원 필요 사건 조기 발굴 등 사건 접수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지원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치료비 112건, 심리치료비 149건, 생계비 12건, 학자금 3건, 장례비 9건에 총 362,287,810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p>
	<p>13.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이첩하도록 하고, 표적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서울중앙)</p>	<p>○ 검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p> <p>○ 아울러, 변호인 참여·접견 제한 시 인권보호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 등 출석·귀가 지원 제도 시행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p>
	<p>14. 전자발찌 훼손자에 대하여 법무부 및 경찰과의 신속한 영장 신청 및 검거 협조를 위하여 노력할 것(서울동부)</p>	<p>○ 서울동부지검은 ① ‘검찰상황실 근무와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를 개정하여 심야시간(23:00~09:00) 접수 영장 처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고 절차를 신설하였고, ② 법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긴급한 영장의 경우 당직 판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③ 관내 보호관찰소 소속 특사경을 대상으로 긴급한 영장 신청 시 검사와 유선 협의 등 조치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p> <p>○ 향후에도 당직 중 영장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p>
	<p>15.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진동균 검사 성추행 사건을 유념하여 서울</p>	<p>○ 서울남부지검은 인권보호부 소속 부부장검사를 감찰전담 검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예방감찰</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남부지검에서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스로 개혁해서 검찰 내부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여 신뢰받는 서울남부지검이 되도록 노력할 것(서울남부)</p> <p>16. 2020년 8월에 있었던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춘천지검)</p>	<p>활동을 실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21. 9.경부터 신규직원 발령 후 1개월, 3개월 경과 시 면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업무 적응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익명 보장 수시 면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감찰활동 수행함</li> <li>○ 주요 사건 발생 시 즉시 감찰(진상) 조사 착수하여 신속·정확하게 진상 필벌 진행함</li> <li>○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대처를 통해 향후에도 공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울남부지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li> <li>○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수사 결과 5. 20.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등 총 10명의 업무상과실을 규명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하였음</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 자체재기수사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해당 제도는 고소·고발인의 항고 취지를 봉쇄하는 제도이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고검으로 송부하되 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예규)에 따라 ‘명백한 오류’가 있어 즉시 시정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체재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고, 향후에도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 지침을 준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자체재기 건수는 대전지검 총 9건(’19년 7건, ’20년 2건, ’21년 0건으로 전체 항고사건의 0.3%), 청주지검 총 2건(’19년 1건, ’20년 1건, ’21년 0건으로 전체 항고사건의 0.2%)임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li> </ul> </li> <li>○ 항고가 명백히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즉시 재기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대구고검)</li> <li>○ 대검예규 제1148호(’20.11.24.)에 따라 항고 접수 시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간단히 시정 가능한 경우 자체재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고검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li> <li>○ 최근 3년간 대구지검 자체재기건수는 총 23건으로 전체 항고사건의 0.3%로 확인됨</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에도 고소, 고발인의 항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 지침을 준수할 예정임(대구지검)</li> <li>○ 자체재기 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전에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승인요청사항은 &lt;항고 자체 재기 승인 관리부&gt;에 기록하여 통계에 반영하고 있음(부산고검)</li> </ul> </li> <li>○ 자체재기수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음 (부산고검)</li> <li>○ 자체제기수사는 고소·고발인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며,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부산지검)</li> <li>○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여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부산지검)</li> <li>○ 자체재기수사에 대한 통계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건의를 검토하겠음 (울산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재기수사에 대한 통계 관리 중으로, 향후에도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고의 취지를 해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하도록 하겠음(창원지검)</li> <li>○ 항고가 명백히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즉시 재기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기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건의할 예정임(광주고검)</li> <li>○ 검찰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자체재기수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체재기수사로 인해 고소·고발인의 항고 취지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음(광주지검)</li> <li>○ 지검 및 관내 지청의 항고건수 및 자체재기수사 처리현황 지속 관리</li> <li>○ '21. 11.부터 '22. 4.까지 항고 119건 중 자체재기수사 1건(재기율 0.8%)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을 보장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재기수사 1건은 기소유에 처분 변경하여 약식명령 청구(전주지검)</li> </ul> </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재기수사는 불기소처분을 재기하여 증거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고소·고발인의 주장을 재검토하는 경우도 많음. 자체재기수사 사유를 점검하여 고소·고발인 권리 침해가 없도록 하겠음(제주지검)</li> </ul>
	<p>2. 검사들의 육아휴직 이용 실적이 부진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검사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육아휴직 사용 검사가 복직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육아시간(하루 2시간), 유연근무제 등의 자유로운 사용을 권장하는 등 육아 고충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li> <li>○ 현재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는 없는 실정이나 앞으로도 육아휴직을 적극 이용토록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음(대구고검)</li> <li>○ 검사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복직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겠음 ※ 2020. 4명, 2021. 10. 이후 3명 육아휴직 사용함</li> <li>○ 또한,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정착을 위해 ‘연가사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함’(21.11.04.)(대구지검)</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무하는 검사 중 육아휴직 대상은 없으나, 추후 검사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예외없이 허가할 예정임(부산고검)</li> <li>○ 소속 검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승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검사들이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부산지검)</li> <li>○ 소속 검사들에 대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음(울산지검)</li> <li>○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분위기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창원지검)</li> <li>○ 향후, 육아휴직을 적극 이용토록 장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음(광주고검)</li> <li>○ 검사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업무 내외적으로 제한을 느끼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음(광주지검)</li> <li>○ ‘출산돌봄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방안 및 ‘MZ세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립된 연가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연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검사 4명(’19), 3명(’20), 1명(’21), 1명(’22), 가족돌봄휴가 검사 사용일수 총 32일(’21. 11. 이후)</li> <li>※ ‘출산돌봄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방안 대검에서 전국 각급 청에 전파하여 시행 중(전주지검)</li> </ul> <p>○ 당청은 육아휴직 등 검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선택을 장려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음(2021년 하반기 기준 육아휴직 2명(여검사 1, 남검사 1))(제주지검)</p>
	<p>3. 부산지방검찰청은 국민소통옴부즈만 제도 운영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부산지검)</p>	<p>○ 홈페이지에 국민소통 옴부즈만 안내 팝업창 게시, 홍보명함 배포, 청사 내 홍보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제도를 알리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음</p>
	<p>4. 인권침해를 한 검사는 직무배제나 적격심사를 통해 검사의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변호사로도 일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공통)</p>	<p>○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감찰을 통해 징계, 직무배제 등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호관이 검사실의 인권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찰 수사절차 관련 주요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전담하는 등 인권보호</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실태를 점검, 지도, 감독하고 있고, 인권침해 예방·감독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제도개선을 통해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가 현저한 인권침해나 적법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대검 및 법무부에 신속히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히 대처하겠음(대구고검)</li> <li>○ 인권보호관이 지속적으로 검사실의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사례 발견시 당검사실 및 청 전체 공지하여 유사사례 방지하고 있음</li> <li>○ 검사가 징계로 해임, 면직된 경우 일정기간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발견 시 즉각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감찰활동 강화할 예정임(대구지검)</li> <li>○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안 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대처할 것이며, 그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해당할 경우 직무배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무부에 보고하고 사실관계에</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대하여 정확히 보고하겠음(「인권 보호수사규칙」 제76조)(부산고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중한 사안일 경우 상급기관에 신속히 보고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부산지검)</li> <li>○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대처하며, 신속하게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음(울산지검)</li> <li>○ '21. 12. 28. 개정된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에게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의자 등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중으로, 향후에도 인권침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창원지검)</li> <li>○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가 형사범죄를 구성하거나 중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그에 상</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히 대처하겠음(광주고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음(광주지검)</li> <li>○ 구속피의자 인권보호관 면담, 직접 수사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등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 메시지 발송을 통해 청 구성원의 인권의식 함양에도 힘쓰겠음</li> <li>○ 향후,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전주지검)</li> <li>○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따라 변호사 자격 제한 가능(제주지검)</li> </ul>
	<p>5. 휴게공간이 없는 관할 지청에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대전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지청의 경우 노후된 건물로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실정인 바(숙직실을 휴게공간으로 병행하여 사용), 건물의 활용 공간을 파악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대전고검)</li> <li>○ 마산지청은 창원시 소유의 구)마산</li> </ul>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시의회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현재는 도서실 공간에 직원 휴게실을 마련하여 사용 중이며 추후 창원시와 계약 연장 시 휴게 공간 확장 검토 및 협의할 예정 (부산고검)</p> <p>○ 관내지청 중, 장흥지청을 제외한 모든 청은 휴게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흥지청의 도서실 등을 휴게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광주고검)</p>
	<p>6.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관련자가 더 있는지를 밝히고 보충수사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청주지검)</p>	<p>○ 현재 수사팀 검사 2명이 재판에 직접 관여하며 1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p> <p>- 공소유지 과정에서 추가 관련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면 철저한 보충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할 계획임</p>
	<p>7. 2021년 1월부터 8월 까지 수사중지 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진하므로 향후 수사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대구지검, 광주지검)</p>	<p>○ '21. 7. 2. 신설된 인권보호부가 피의자 등 특정가능함에도 수사중지결정된 사건 등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요구를 하고 있음</p> <p>- 신설 이전('21. 1. ~ 6.) 12건이던 시정조치요구건수가 신설 이후 ('21. 7. ~ 현재) 127건으로 증가</p> <p>○ 향후 인권보호부가 부당수사중지 결정된 사건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요구하는 등 사경의 수사통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대구지검)</p> <p>○ 검찰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의 수사 중지 기록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찰의 수사중지 기록에 시정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음(광주지검)
	8.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 투자시기 사건에서 공소장을 지나치게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직무를 태만한 담당 검사를 징계할 것 (제주지검)	○ 해당 지적 사안은 2021. 9.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서 공소장 등 검토 결과 문제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현재 해당 검사가 당청에서 전출하였음

### 3.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산하기관)

구분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이민정책 연구원	1. 아프가니스탄 수용 난민을 포함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사회통합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외국인관리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관련 연구실적(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외국인주민 증가와 범죄발생 상관관계 실증연구</li> <li>• 언택트시대 지방자치단체 정주형 이주인력 활용 방안</li> <li>•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자격 통합방안 연구</li> <li>• 단순기능인력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질적 확대 연구</li> </ul> </li> <li>- '22년도 관련 연구실적(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li> <li>• 이민경로별 영주·이민제도 개선연구</li> <li>• 영주·귀화자 맞춤형 교육과정 연구</li> <li>•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li> </ul> </li> </ul> </li>   <li>○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관련 연구실적(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유사상황에 대한 대안적 국제보호</li> <li>• 난민전담공무원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li> </ul> </li> <li>- '22년도 관련 연구실적(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 정책연구</li> <li>•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개발연구</li> <li>•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 추진체계 연구</li> <li>• 이민통합기금 신설 및 활용방안 연구</li> </ul> </li> </ul> </li>   <li>○ 그 외, 이슈브리프, Weekly Report 등을 통해 체류 및 난민 관련한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등을 제공</li> </ul>